

부속서 6-나
인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I. 수평적 양허 | | | |
| 이 양허표에 포함된 전 분야 | <p>3) 인도정부가 공표한 Press Note 1(2005년) 규정이 적용되는 분야는 FIPB 승인이 있어야 함.1)</p> <p>3) 외국 회사는 인도에서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p> <p>a) 합작회사나 자회사를 통해 1956년 회사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여 법인체로 진출 이러한 법인체들은 2000년 외국환거래법(인도 비거주자의 증권 이전이나 발행) 규정, (외국인 직접투자 계획)에서 허용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p> <p>b) 연락 사무소/대표 사무소, 프로젝트 사무소, 그리고 지점 사무소를 통한 외국 실체의 사무소 형태로 진출</p> <p>그러한 사무소는 2000년 외국환거래법(인도 내 지점 또는 다른 사업장의 설립)에서 허용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p> | <p>3) 공기업 또는 정부 기업과의 합작의 경우, 기술 이전과 관련하여 가장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서비스 공급자 / 회사에게는 접근의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할 것임.</p> <p>3) 국내 및 대한민국의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적용되는 세법은 1961년 소득세법을 따름.</p> <p>3) 보조금이 제공될 경우, 인도의 국내 서비스 공급자들에게만 지급됨.</p> | |

1) 이것은 경제적 수요심사(ENT) 요건은 아님.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 4) 제8장(자연인의 이동)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 4) 시장접근 항목에서 기재된 항목 각각에 대한 입국 및 일시 체류 비자 및 비자상의 요건을 제외하고는 제한 없음. 모든 항목 : 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증명하는 정보에 관련된 특정요구의 이행 (c), (d) 항목 : - 계약 증명서 - 경력을 포함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한 필수 교육 및 전문자격 보유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II. 분야별 구체적 약속 | | | |
| 1. 사업 서비스 | | | |
| A. 전문직 서비스 | | | |
| (b) 회계, 회계장부 정리 서비스 (CPC862) (감사 서비스 제외)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과 서비스 공급자의 국가에서 전문성 보장 보험(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을 얻는데 필요한 요건 외에는 약속 안함. | |
| (d) 건축설계서비스 (CPC 8671)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건축설계사에 의해 설립된 합작회사의 형태로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e)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8672)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f) 통합엔지니어링 서비스 (CPC8673)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g) 도시계획 및 경관 건축 서비스 (CPC8674)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건축설계사에 의해 설립된 합작회사의 형태로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h) 의료 및 치의 서비스 (CPC 9312) | 1) 설립된 의료 기관들 사이에 치료나 연구의 목적으로 제 2의 의견을 제공하는 거래인 공급자 대 공급자간 서비스의 규정에 대하여는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최신 기술이 도입된다는 조건 하에 외국인 지분 총량 74%인 법인형태만 가능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자선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제한 없음.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공공 자금을 사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인도 시민들에게만 제공되거나 비인도시민들에게는 다른 가격으로 제공 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i) 수의료서비스 (CPC932)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j) 산과, 간호사, 물리치료사, 의료보조자 서비스 (CPC93191) | 1) 설립된 의료 기관들 사이에 치료나 연구의 목적으로 제 2의 의견을 제공하는 거래인 공급자 대 공급자간 서비스의 규정에 대하여는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최신 기술이 도입된다는 조건 하에 외국인 지분 총량 74%인 법인형태 제한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공공 자금을 사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인도 시민들에게만 제공되거나 비인도시민들에게는 다른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CPC 84)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C. 연구개발서비스 (a) 자연과학 연구개발 서비스 열, 빛, 전자기학, 천문학. 단,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 부문은 제외 (CPC 85101)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응용 과학, 구조, 제강, 기계, 전기, 통신, 조선, 항공, 도시공학, 건축, 정보 등을 포함하는 엔지니어링 및 기술 (CPC85103) | | | |
| 농업 과학에서의 연구개발 서비스 (CPC85104) | 1) 제한 없음.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b) 인문·사회과학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2)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바이오기술 연구개발 서비스 (의료용 바이오기술 제외)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D. 부동산 서비스 (b) 보수나 계약을 토대로 한 서비스 (CPC 822)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담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E. 운전인력을 동반하지 않은 임대 서비스 | | | |
| (a) 선박 임대서비스 (CPC 83103) (선박의 실제 국제 화물 운송 서비스는 제외)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최저 자본 환원 기준(minimum capitalization norms)을 고수해야 하는 기재사항을 제외하고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b) 항공기임대서비스 (CPC 83104)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최저 자본 환원 기준(minimum capitalization norms)을 고수해야 하는 기재사항을 제외하고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c) 그 밖의 운수장비임대서비스 (CPC 83101,83102, 83105) (철도 및 다중수단 운송 제외)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최저 자본 환원 기준(minimum capitalization norms)을 고수해야 하는 기재사항을 제외하고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d)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임대서비스 (CPC 83106-83109)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최저 자본 환원 기준(minimum capitalization norms)을 고수해야 하는 기재사항을 제외하고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e) 개인·가정물품 관련 임대서비스 (CPC 832)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최저 자본 환원 기준(minimum capitalization norms)을 고수해야 하는 기재사항을 제외하고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F. 기타 사업서비스 | | | |
| (a) 광고서비스 시간별 광고 면적을 대여하는 서비스의 판매(CPC87110) 광고 관련 서비스의 기획, 제작 및 배치(CPC87120) | 1) 해외 채널(foreign channels)은 국내업체를 통해서 위성방송 (down link beam)에 광고해야 하고, 해외 출판언론은 국내 업체를 통해서 광고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법인 설립 및 외국인 지분 49% 제한 규정을 지키면 제한 없음. 경영 관리는 인도에서 이루어져야 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내용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인도 국민들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요건이 충족되면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c) 경영컨설팅 서비스 (법률자문 관련 서비스는 제외) (CPC 86501**, 86502**, 86503**, 86505**, 86506**, 86509**)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d) 경영컨설팅서비스 (CPC 86601)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e) 기술 시험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g) 어업 부수서비스 (CPC 882)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h) 광업 부수서비스 (CPC 883+5115)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j) 에너지 분배에 따라 부수서비스 (CPC 887**) (에너지 거래 및 할당분배기능 제외)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k) 인력 알선서비스 (CPC 872)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n) 장비의 유지 및 수선 서비스 (해양조선, 항공, 기타 운송 수단 제외) (CPC 633)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o) 빌딩청소 서비스 (CPC 874)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p) 사진서비스 (CPC 875**) (항공 사진, 위성사진 위성 가능한 사진 (satellite enabled photography)은 제외)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q) 포장서비스 (CPC 876)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s) 국제회의 용역서비스 (CPC 87909*)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기타 : (t) 전문디자인 서비스 (CPC 87907*)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건축설계사에 의해 설립된 합작회사의 형태로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 | |
| C. 통신서비스 | | | |
| (a) 음성 전화서비스 (CPC7521**) |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서비스 제공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가 담당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해당 서비스 분야 관련, 인도에서 사전합작을 수행한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FIPB 승인이 요구됨.</p> <p>허가의 수는 관료권, 주파수 한정 등 희소자원에 따라 서비스 지역별 2건으로 제한할 수 있음.</p> <p>민간 사업자는 인도에 등록된 기업으로서 전체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해서는 안 됨.</p> |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p> | <p>인도가 동의하는 기본통신서비스 규제의 틀에 관한 정의와 원칙은 “인도 추가양허 주재”라는 부속서에 포함됨</p>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 <p>서비스 사업자는 허가 받은 지역 내에서만 장거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p> <p>음성전화서비스의 재판매는 불허함. 다만, 허가 받은 사업자는 공중전화서비스의 경우 수수료 기반으로 프랜차이즈를 부여할 수 있음.</p> <p>서비스 제공에 관한 세부적인 조건은 허가 조건을 준용</p>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p>(b) 패킷 교환 데이터 전송서비스 (CPC7523**)</p> |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서비스 제공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가 담당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p> <p>해당 서비스 분야 관련, 인도에서 사전합작을 수행한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FIPB 승인이 요구됨.</p> <p>허가의 수는 관료권, 주파수 한정 등 희소자원에 따라 서비스 지역별 2건으로 제한할 수 있음.</p> <p>민간 사업자는 인도에 등록된 기업으로서 전체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해서는 안 됨.</p> <p>서비스 사업자는 허가 받은 지역 내에서만 장거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p> <p>음성전화서비스의 재판매는 불허함. 다만, 허가 받은 사업자는 공중전화서비스의 경우 수수료 기반으로 프랜차이즈를 부여할 수 있음.</p> <p>서비스 제공에 관한 세부적인 조건은 허가 조건을 준용</p>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p>무선호출 서비스 (CPC 7523**)</p> |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서비스 제공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가 담당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p> <p>해당 서비스 분야 관련, 인도에서 사전합작을 수행한 외국인 투자가의 경우 FIPB 승인이 요구됨.</p> <p>허가의 수는 관로권, 주파수 한정 등 희소자원에 따라 서비스 지역별 2건으로 제한할 수 있음.</p> <p>민간 사업자는 인도에 등록된 기업으로서 전체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해서는 안 됨.</p> <p>서비스 사업자는 허가 받은 지역내에서만 장거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p> <p>음성전화서비스의 재판매는 불허함. 다만, 허가 받은 사업자는 공중전화서비스의 경우 수수료 기반으로 프랜차이즈를 부여할 수 있음.</p> <p>서비스 제공에 관한 세부적인 조건은 허가 조건을 준용</p>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c) 회선 교환 데이터전송 서비스 (CPC7523**)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허가 받은 음성전화서비스 사업자는 허가 받은 지역 내에서 PSTN ²⁾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f) 팩시밀리 서비스 (CPC7521**+7529**)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허가 받은 음성전화서비스 사업자는 허가 받은 지역 내에서 PSTN 네트워크를 통해 팩시밀리를 전송할 수 있음. 서비스 사업자의 가맹점은 상업용 팩시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g) 전용회선 서비스 (CPC7522**+7523**)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허가 받은 음성전화서비스 사업자는 허가 받은 지역 내에서 자사의 고객들이 사용하는 용도로 전용회선을 제공할 수 있음. 해당 전용회선의 재판매는 불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2) PSTN은 DoT/MTNL 또는 허가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일반 전화 교환망)를 지칭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p>다음은 데이터 및 메시지 전송 서비스:</p> <p>(h) 전자메일 (CPC7523**)</p> <p>(i) 음성메일(CPC7523**)</p> <p>(j) 온라인 정보 및 DB 검출(CPC7523**)</p> <p>(l) 고도/부가 팩시밀리 (저장·전송·저장 및 검출 포함)서비스 (CPC7523**)</p> <p>(n)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 (CPC843**)</p>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1956년 회사법에 근거하여 인도에 등록된 기업의 전체 외국인 지분은 74%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투자는 2000년 외국환거래법의 통제를 받음.</p> <p>해당 서비스 분야 관련, 인도에서 사전합작을 수행한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또는 49%를 초과하는 외국인 지분의 경우 FIPB 승인이 요구됨.</p>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o) 기타 (i) V-Sat 서비스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서비스 제공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가 담당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민간 사업자는 인도에 등록된 기업으로서 전체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해서는 안 됨. 해당 서비스 분야 관련, 인도에서 사전합작을 수행한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FIPB 승인이 요구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세부적인 조건은 허가 조건을 준용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ii) 셀룰러이동전화 |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서비스 제공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가 담당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p> <p>민간 사업자는 인도에 등록된 기업으로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49%를 초과해서는 안 됨. 그러나, 허가의 수는 관료권, 주파수 한정 등 희소자원에 따라 서비스 지역별 2건으로 제한할 수 있음.</p> <p>해당 서비스 분야 관련, 인도에서 사전합작을 수행한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FIPB 승인이 요구됨.</p> <p>서비스 제공에 관한 세부적인 조건은 허가 조건을 준용</p>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 제공자 (카테고리 I)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다음사항 외 제한 없음 a) 서비스 제공에 관한 세부적인 조건은 허가 조건을 준용 b) 1956년 회사법에 근거하여 인도에 등록된 기업의 전체 외국인 지분은 74%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투자는 2000년 외국환거래법의 통제를 받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다음사항 외 제한 없음: i) 허가받은 회사의 기술망 운영 최고담당자 및 보안 담당 최고담당자, 그리고 합법적인 도청을 담당하는 자는 인도에 거주하는 인도시민권자이어야 함 ii) 허가받은 회사의 경영이사회의 다수는 인도시민권자로 구성되어야 함 iii) 회장, 이사(전무), 최고경영자 및/또는 최고재무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 매년 인도 내무부의 보안 요건을 거쳐야 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인터넷 서비스 |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서비스 제공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가 담당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해당 서비스 분야 관련, 인도에서 사전합작을 수행한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FIPB 승인이 요구됨.</p> <p>허가의 수는 서비스 지역별 2건으로 제한할 수 있음.</p> <p>1956년 회사법에 근거하여 인도에 등록된 기업의 전체 외국인 지분은 74%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투자는 2000년 외국환거래법의 통제를 받음.</p> <p>해당 서비스 분야 관련, 인도에서 사전합작을 수행한 외국인 투자가 또는 49%를 초과하는 외국인 지분의 경우 FIPB 승인이 요구됨.</p> <p>전화서비스의 재판매는 불허함. 다만, 허가 받은 사업자는 수수료 기반으로 프랜차이즈를 부여할 수 있음.</p> <p>서비스 제공에 관한 세부적인 조건은 허가 조건을 준용</p> |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다음사항 외 제한 없음:</p> <p>i) 허가받은 회사의 기술망 운영 최고담당자 및 보안담당 최고담당자, 그리고 합법적인 도청을 담당하는 자는 인도에 거주하는 인도 시민권자 이어야 함. ii) 허가받은 회사의 경영이사회는 다수는 인도시민권자로 구성되어야 함. iii) 회장, 이사(전무), 최고경영자 및 최고재무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 매년 인도 내무부의 보안 요건을 거쳐야 함. iv) 정부공공영역 수행</p>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D. 시청각 서비스 (a) 영화, 비디오 배급 서비스 (CPC 96113)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i) 인도 외부에서 설립된 회사의 지점 기능으로 허가받은 대표 사무소를 통해서만 가능 (ii) 한-인도 CEPA로 인한 작품수입의 수량 상한선은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005.8.24 일자 인도 수정양허안 TN/S/O/IND Rev. 1*3)에 따름. 현행 제한은 연간100편임.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3) 인도의 양허는 한국에만 별도로 적용 면제됨 없이 GATS 양허표를 따름.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3.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 | | |
| A. 건물 관련 일반 공사 (CPC512) B. 토목 엔지니어링 관련 일반 공사 (CPC513)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여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여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C. 설치 및 조립 공사 (CPC514+516) D. 건축물 완공 및 마무리 (CPC517) E. 기타 (CPC511+515+518) | |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4. 유통서비스 (생물 제외) | | | |
| A. 위탁중개인 서비스 보수나 계약을 토대로 한 다음과 같은 상품의 판매 포함 원료농산물 (CPC 62111**) 음료와 담배를 제외한 식료품 (CPC62112**) 기계류, 산업 장비 및 장치, 단 원동기, 전자, 그리고 오토바이 제외 (CPC62114) 가구, 가재도구, 철물 (CPC62115) 직물, 의류, 신발류(CPC62116)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적용가능한 2000년 외국환거래법 규정에 합치하고 RBI/FIPB의 승인을 충족하면,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B. 도매 서비스 원료농산물 (CPC6221**) 음료 및 담배를 제외한 식료품(CPC6222**) 직물, 의류 및 신 발류 (CPC6223) 가재도구 (6224) 기타소비재 (6226) 기계류, 장비 및 도구(CPC6228)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적용가능한 2000년 외국환거래법 규정에 합치하고 RBI/FIPB의 승인을 충족하면,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5. 교육 서비스 | | | |
| <p>고등 교육서비스 (CPC 923)</p> | <p>1) 원산지 국가의 국내 서비스 공급자에 적용가능한 규정에 따른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적절한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확정될 수 있는 수업료이고, 그러한 수업료는 개인별로 할당되는 수업료이거나 폭리가 아니라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제한 없음.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적합한 규제기관에 의해 규정된 규정을 따른다는 점을 충족하면,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6. 환경서비스 | | | |
| <p>B. 폐기물 처리 서비스 (CPC 9402)</p> <p>C. 위생 및 유사 서비스 (CPC 9403)</p> |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p>7. 금융서비스</p> <p>금융서비스관련 약속은 GATS와 금융서비스 협정 부속서에 따른다. 모든 약속은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그리고 다른 권한있는 기관(other competent authority)의 진입 요건, 국내법, 규칙 및 규정, 가이드라인 및 조건을 따라야 함.</p> <p>다음에 열거된 분야 / 업종은 금융 서비스 부속서에 명시된 것에 따름.</p> | | | |
| <p>A.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p> <p>생명보험</p> <p>[(5(a)(i)(A)]</p> | <p>1)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설립은 외국인 지분이 26%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설립에 의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손해보험 [5(a)(i)(B)] | 1) 인도로 들어가고 나오는 화물은 모두 인도의 보험회사들에게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요건이 없는 적하보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적하보험은 계약 조건에 따라 화물의 구매자 또는 판매자에 의해 가입됨. 이런 입장은 계속 유지될 예정임. 일단 계약에 의거하여 인도의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수입품에 대한 F.O.B계약이나 수출품에 대한 C.I.F계약과 같이 보험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동의한 경우 보험은 인도 보험회사에서만 가입되어야 함. 2) 약속 안함. 3) 설립은 외국인 지분이 26%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설립에 의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재보험 및 재재보험 5(a)(ii) | 1),2) 재보험은 강제적이거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인도 보험회사들에게 보험을 가입하고 남은 잔여 위험에 대해서만 외국 재보험업자들에게 가입할 수 있음. 3) 설립은 외국인 지분이 26%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에 따르고 법인설립에 의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보험중개 (재보험 한정) Ex.5(a)(iii) | 1),2) 국내 위험에 대한 재보험은 위의 재보험 및 재보험 항목에서 명시된 범위 내에서 해외 중개인을 통해 외국 재보험 업자들에게 가입할 수 있음. 3) (i) 해외 중개인들은 위에서 언급된 범위 내에서 인도 보험회사들로부터 재보험 사업을 중개할 수 있도록 주재대표와 주재 사무소를 둘 수 있음. 또한 해외 중개인들은 해외로부터 인도보험회사들에게로 재보험사업을 중개할 수도 있음. (ii) 위에서 언급한 업무 외에는, 주재 대표와 주재 사무소는 인도 내에서 어떠한 다른 활동도 할 수 없음. (iii) 주재 대표와 주재 사무소의 모든 비용은 해외로부터 받은 송금으로 모두 충당해야 하며 인도 거주자들로부터 인도 내에서 어떠한 수입도 받을 수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상담·보험계리·위험평가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Ex.[5(a)(iv)] | 1) 제한 없음. 2) 약속 안함. 3) 외국회사는 외국인 지분이 51%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설립에 의해 설립될 수 있다는 조건을 준수해야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한 없음. 보험계리, 자문서비스의 경우 인도보험계리사 협회의 공인 인증이 필요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p>은행 및 다른 금융 서비스 (보험 제외)</p> <p>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p> <p>5(a)(v)</p> <p>소비자 신용, 담보 대출, 팩토링 및 상업 거래 금융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p> <p>Ex.5(a)(vi)</p> | <p>1)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아래에 열거된, 은행 및 비은행 금융 서비스 회사에 대해 약속이 부과된 서비스 종류 각각에 대한 시장진입은 최소 자기자본 규제를 충족하여야 함.</p> <p>팩토링 및 벤처캐피탈을 제외한 이 양허목록에 열거된 모든 분야의 활동은</p> <p>(i) 지점 또는 자국에서 은행으로 인가받고 감독되는 외국 은행의 완전소유 자회사 형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인도 중앙은행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p> | <p>1)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팩토링 및 벤처캐피탈을 제외한 이 양허목록에 열거된 모든 분야의 활동은</p> <p>(i) 공공부문 기업들은 인도에 설립된 상업은행(완전소유 자회사 포함)의 정기에금에 한하여 잉여자금을 투자할 수 있음. 완전소유 자회사의 정기에금에 대한 잉여자금 투자는 인도중앙은행의 지침을 따름.</p> <p>(ii) 시장접근 항목에서 언급된 제한 요건에 따라 설립된 법인체를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신용선불직불카드, 여행자 수표, 및 은행 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5(a)(viii) | (ii) 인도는 대한민국 은행의 현지 지점 설립 신청에 대해 인도의 지점 설립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우호적인 고려 (favorable consideration) ⁴⁾ 를 해야 함. 이러한 우호적인 고려는 4년 동안 10회까지의 신청에 대해 주어짐. (iii) 은행들은 자신들의 지점과 은행이 지정한 장소에 자동화기기 (ATM)을 설치할 수 있음. 인가된 지점외에 ATM을 설치하는 것은 새로운 영업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승인을 필요로 함. 해외 은행이 설치하는 ATM에 대한 승인은 위 (ii)에서 언급된 10개 인가에 포함되지 않음. | | |

4)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우호적인 고려'는 허가를 내 주어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p>보증과 약정 5(a)(ix) 다음을 자기계산으로 거래하는 것 :</p> <p>화폐시장상품 (수표, 어음, 예금증서 포함) 외환양도성증권 Ex. 5(a)(x)(A)(B)(E)</p> | <p>(iv) 인도에서 개별적으로 은행업을 하도록 인가받은 외국 은행 지점의 다른 금융 서비스 회사에 대한 투자는 소유 재산의 10%, 혹은 투자한 회사의 자본의 30% 중 적은 금액을 넘지 말아야 함.</p> <p>(v) 새로운 외국 은행에 대한 인가는 외국은행 의 인도 내 부내·부외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인도은행업 시스템의 부내·부외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의 최대 15%를 초과할 경우 거절될 수 있음.</p> | | |
| <p>수표, 어음, 그리 고 기타 상품의 청산 서비스 Ex.5(a)(xiv) 양도성증권 [5(a)(x)(E)]</p> | <p>(vi) 외국 은행은 무차별적 자원 배분 요건을 충족해야 함.</p> <p>(vii) 추가적으로 외국 은행들은 해외 자본 비율 한계인 49%까지 FDI경로를 통해 민간 은행에 투자할 수 있음.</p> <p>(viii) 위에서 언급된 것에 추가적으로, 현지 합작 회사의 설립시 외국 지분은 74%를 초과 할 수 없음. 외국 지분의 참여는 지정된 외국 증권 증개 회사에게만으로 제한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3. 팩토링 Ex 5(a) (vi)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법인설립을 통해 외국 금융서비스 회사 (은행 포함)에게 허용.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시장접근 항목에서 제시된 제한에 따라 설립된 법인체를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4. 벤처 캐피탈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i) 법인설립을 통해 외국 금융서비스 회사 (은행 포함)에게 허용 (ii) 자금 전부 지분(equity)으로 조달되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시장접근 항목에서 제시된 제한에 따라 설립된 법인체를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금융리스 5 (a)(vii)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법인설립을 통해 외국 금융서비스 회사 (은행 포함)에게 허용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현금 및 포트폴리오 관리, 모든 유형의 집합투자관리, 연금기금 관리, 보관예탁, 그리고 신탁 서비스와 같은 자산관리 5(a)(xiii)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설립은 외국인 지분이 26%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설립에 의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매출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5(a)(xi)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i) 인도 내 은행업을 하도록 허용된 외국은행 지점에게 허용 (ii) 외국 지분이 74%를 넘지 않는 법인 설립에 의한 외국 금융기관(은행 제외)에게 허용 외국 지분이 51%를 넘지 않는 법인설립에 의한 은행에게 허용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시장접근 항목에서 제시된 제한에 따라 설립된 법인체를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자금중개업 5(a)(xii) | 1) 2), 3)은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2), 3)은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그밖의 금융서비스 공급 자에 의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5(a)(xv) | 1) 2)은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2)은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금융 컨설팅 서비스 즉 금융자문사 등이 고 객들에게 제공하는 금 융문제, 투자 및 포트 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기업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금융 자 문 서비스 Ex.5(a)(xvi)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i) 인도 내 은행업을 하도록 허가받은 외국 은행 지점에게 허용 (ii) 법인설립에 의한 외국 금융기관 (은행포함) 에게 허용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8. 보건 관련 그리고 공공 서비스 A. 병원 서비스 (CPC 9311) | 1) 설립된 의료 기관들 사이에 치료나 연구의 목적으로 제 2의 의견을 제공하는 거래인 공급자 대 공급자간 서비스의 규정에 대하여는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최신 기술이 도입된다는 조건하에 외국인 지분 총량 74%인 법인형태제한을 제외하고는 제한없음. 공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는 인도 국민들에게만 제공되거나 비인도국민에게는 다른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자선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제한 없음.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9.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 | | |
| A. 호텔 및 기타 숙박 서비스 (CPC Ex.641)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B. 여행알선대행서비스 (CPC 7471)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C. 관광안내 서비스 (CPC 7472)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한-인도 CEPA로 인한 관광안내자 수의 상한선은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005.8.24 일자 인도 수정양허안 TN/S/O/IND Rev. 1*5)에 따를 것임. 현행 제한은 500명임. 4) 한-인도 CEPA로 인한 관광안내자 수의 총 상한선은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005.8.24 일자 인도 수정양허안 TN/S/O/IND Rev. 1*6)에 따를 것임. 현행 제한은 500명임. 그 이외 :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5) 인도의 양허는 대한한국에만 별도로 적용 면제됨 없이 GATS 양허표를 따름.

6) 인도의 양허는 대한한국에만 별도로 적용 면제됨 없이 GATS 양허표를 따름.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10.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서비스(단, 시청각 서비스 제외) | | | |
| A.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CPC 9619) (연극, 라이브 밴드, 서커스 포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D. 스포츠와 그밖의 오락 서비스 (CPC964**) (복권, 도박 및 베팅 서비스 제 외)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상호호혜주의에 따름.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p>11. 운송서비스</p> <p>A. 운송 서비스</p> | | | |
| <p>해운서비스에 대한 약속은 서비스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과 일치하도록 규정되었다. 모든 약속은 국내법을 따르며, 인도 중앙은행, 해운부 또는 다른 권한 있는 기관의 진입 요건, 규칙 및 규정, 조건에 따름. Mode 3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해운 보조서비스 (Maritime Auxiliary Services)는, 인도 중앙 및 주법에 따라 등록된 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주 영업장이 인도에 있는 경우에만 제공될 수 있고, 외국 투자자가 인도 내 특정 서비스 분야에 합작이 있었던 경우, FIPB 승인이 요구됨.</p> | | | |
| <p>국제운송 (부속서 A상 정의된 연안해운 및 근해운송의 화물 및 여객은 제외)</p> | <p>1) a) 정기선 해운: 제한 없음. 다만, - 정기선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40% 이상은 인도 국적선을 위해 유보되어야 함. - 정부 화물과 정부 소유 / 관리 화물의 운송은 인도 국적선에게 우선적으로 적취됨. - FOB/FAS 수입과 수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유지됨. - 인도 국적선은 이러한 화물에 대한 거부권을 우선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야 외국 국적선들이 국제적 임대 기준에 따라 적취가 허용됨.</p> | <p>1) a) 정기선 해운: 제한없음. 다만, 인도와 UN 정기선 동맹의 행동수칙 협약에 참여하는 국가와의 정기선 무역 (정기선 동맹 무역에 제한되지 않음)의 경우, 위 협약의 규정이 적용됨.</p> | <p>항만에서의 다음 서비스는 국제해운업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이용이 보장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로 안내 2. 예선·도선 3. 식량·연료·급수 4. 쓰레기 취합 및 밸러스트 폐기물 처리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 | | 5. 선석배정 6. 항행원조 7. 통신, 급수, 전기 공급 등 항만에 근거를 둔 운용서비스 8. 비상보수시설 9. 정박, 부두, 선박접안 서비스 |
| | 1)(b) 벌크선 : 제한 없음, 다만 (i) LNG 이외의 고체, 액체와 가스 : - 정부 화물과 정부 소유 / 관리 화물의 운송은 인도 국적선(flag vessel)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짐. - FOB/FAS 수입과 수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유지됨. - 인도 국적선 (flag vessel)은 그러한 화물운송에 대한 거부권을 우선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야 외국 국적선들이 국제 임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ii) LNG: 약속 안함. 1) (c) 여객 : 제한 없음. | 1)(b) 벌크선 : 제한 없음, 다만 (i) 인도 국적선에게 우선권이 주어짐. - 정부 화물과 정부 소유 / 관리 화물의 운송은 인도 국적선(flag vessel)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짐. - FOB/FAS 수입과 수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유지됨. - 인도 국적선 (flag vessel)은 그러한 화물운송에 대한 거부권을 우선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야 외국 국적선들이 국제 임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ii) LNG: 약속 안함. 1) (c) 여객 : 제한 없음.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 2) 제한 없음. 3) (a) 제한 없음, 그러나 인도 국적선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중앙법 혹은 지방법 하에서 인도내에 주 영업장소가 있는 등록회사를 설립하거나 조합을 설립하여야 함. 3) (b) 다른 형태의 상업적 주재 국제 해운서비스 공급(정의 준용) : 약속 안함. 4) (a) 선원 : 약속 안함. 4) (b) 핵심 항만 노무자 : 약속 안함. | 2) 제한 없음. 3) (a) 제한 없음. 3) (b) 약속 안함. 4) (a) 선원 : 약속 안함. 4) (b) 핵심 항만 노무자 : 약속 안함.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해운보조서비스 | | | |
| 해상화물취급서비스 항만내 창고업 통관서비스 컨테이너 스테이션 서비스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양허분야 / head note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양허분야 / head note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양허분야 / head note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양허분야 / head note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양허분야 / head note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양허분야 / head note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 |
| 해운 대리점 서비스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양허분야 / head note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양허분야 / head note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해상화물 운송주선 서비스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양허분야 / head note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양허분야 / head note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 |
| 선원포함/선체용선 선박 임대 서비스 (연안해운 및 근해운송 제외)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다만 적당한 인도 선박이 사용가능하지 않을 경우 외국적선을 용선하기 위해 해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다만 인도 국민에 의해 임대된 선박은 외국선박으로 간주됨.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 |
| 선박유지 및 수선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양허분야 / head note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양허분야 / head note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 |
| 선박 중개 서비스 (CPC 748**)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head note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양허분야 / head note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11.C. 항공 서비스 (d) 항공기 유지보수 (CPC 8868**)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기술적 제약으로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해상운송서비스 분야(11.A) 관련 정의

1. 국제해운(화물과 여객)

이 양허표상 “국제해운”이란 선박을 통한 국제 해상 화물과 여객 운송으로서 한 국가의 항만에서 선적하여 다른 국가의 항만에서 하역하는 것을 말한다.

2. 해안 해운

이 양허표는 “연안 해운”과 “해상운송서비스”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연안 해운” 및 “해상운송서비스”란 인도 내 항만간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 인도영역 내에 위치한 동일 항만에서 선적 및 하역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인도 내의 항만과 인도 대륙붕 위에 설치된 구조물이나 시설물간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말한다.

3. 근해 운송

이 양허표상 “근해운송”이란 인도 대륙붕의 천연자원 개발과 관련한 구조물 또는 개발 구역이나, 인도 연안 심해저, 심해저 하층토 또는 인도의 대륙붕 자체와 인도 내 항만 사이에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해운서비스를 포함한다.

4. 다른 형태의 상업적 주재 국제 해운서비스 공급이란

국제해운서비스 공급을 위한 다른 형태의 상업적 주재 국제 해운서비스 공급자가 그들의 고객에게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해상운송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a. 소비자들과의 직접 접촉을 통하여 해상 운송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견적서에서 송장까지를 포함하는 홍보 및 판매 활동. 이러한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당사자가 직접 운영하고 제안하는 것이거나, 서비스 판매자가 서비스 제공자와 합법적인 계약을 맺은 상황이어야 한다.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b. 정박, 접안과 접안 서비스, 그리고 통합운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도로, 철도, 내륙수로와 같은 다른 운송수단과의 연계서비스를 포함한 운송 및 관련 서비스를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의 고객(고객에게 재판매)을 위하여 취득
 - c. 운송 서류, 관세 서류, 그리고 운송되는 물품의 원산지나 특성과 관련한 서류의 준비
 - d. 전자 자료의 교환과 전산화된 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사업 정보의 제공
 - e. 현지에 설립된 해운대리업체와 사업 계약을 수립하고, 지역에서 채용된 인력의 임명(해외 채용 인력의 경우 인력 이동에 대한 수평적 양허에 합치되도록)
 - f. 배의 기항 또는 화물 통제를 관리
 - g. 선박 관리자의 서비스 (Ships Managers' Services)의 제공

참고: 해운 서비스 공급자, 특히 선박 인력과 승무원을 제공하고 선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충족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특정한 기준과 조건을 실행하기 위해서 회사의 소유자, 운영자, 중개인과 관리자는 다음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국제 기준 뿐 아니라 국제해사기구 약정 및 제안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
- 해당 인물이 책임자이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구조 확인
- 안전 및 해양오염방지책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
- 품질관리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와 영업의 투명성
- 해운서비스제공자의 등록 / 자격 시스템이 인도 내에서 고려되는지 여부

5. 선박 관리자란 선박의 소유주 혹은 운영자의 대리인이나 중개인의 자격으로 인도에 화물 수취의 목적, 선박의 관리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출을 허락하고 협상하는 목적, 혹은 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해상화물취급서비스란 터미널 운영업자를 포함한 하역회사가 수행하는 활동을 말하며 항만노무자가 하역회사 또는 터미널 운영회사와는 별개로 조직된 경우에는 항만노무자들의 직접적 활동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에 포함되는 활동에는 다음 사항의 조직 및 관리를 포함한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선박으로부터의 화물의 양하와 선박으로 화물의 적하
- 화물의 끈 묶기/끈 풀기
- 선적전 또는 양하 후 화물 인수/인도 및 보호

조직과 관리는 (1)숙련노동자(항만노무자)를 감독하고, (2)소유나 임대나 다른 방법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이용하여 선상이나 항구나 적절한 저장 공간을 만들어내는 행위, (3)화물의 무게나 크기를 재고 소화물과 표(marking)를 확인하고, (4)서비스와 관련한 사무처리 문제와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7. 해상화물운송주선서비스란 실제 운송 및 관련서비스의 조직, 화물의 집적, 통합 및 포장, 그리고 선적 서류 준비 및 사업정보의 제공을 통해 화주를 대신하여 선적 업무를 조직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8. 해운대리점 서비스란 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 이상의 해운선사 또는 해운회사의 영업이익을 대표하는 활동을 말한다.

- 견적부터 송장작성까지 해상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마케팅 및 판매
- 회사를 대신하여 선하증권 발행
- 필요한 관련 서비스 취득 및 재판매, 서류 준비 및 사업정보의 제공
- 요청이 있을 경우, 선박기항을 편성하거나 화물을 접수하는 회사를 대신하여 업무 수행
- 인도내의 항구에 정박하는 동안 외국 선박이 필요로 하는 모든 항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하역 회사를 고용하여 주체 대신 화물의 적하와 양하를 하도록 조치
- 주체를 대신하여 운임료를 징수하는 행위

9. 통관서비스란 공급자의 활동이든 또는 주요활동의 일상적인 보조활동이든지 간에 수출입 또는 화물의 일관수송과 관련 다른 당사자의 통관절차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10. 정부 화물이란 인도 정부 기관 / 부처가 구입하거나 다른 국가와의 대출 / 신용 협정에 기초한 다른 국가로부터 오는 화물(원유, 석유, 부산물, 석탄, 천연가스, 비료용 천연재료, 곡물 등을 포함하는 수입 화물)과 정부 원조를 포함하는 인도 정부 기관 / 부처의 수출품을 말한다.

11.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집하 서비스란 컨테이너의 적집/적출 작업과 수리 및 선적에 이용할 목적으로 컨테이너를 항만 내에 보관하는 활동을 말한다.

12. 선박의 정비 및 수리란 승객, 화물운송 사업체 혹은 선박 대여 업체를 대신하여 선박의 수리 및 관리, 수선 및 분해검사, 해상 보험 및 승무원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3. 선원 포함 선박임대 서비스나 선체용선 서비스란 국제무역을 목적으로 항해를 하는 선박에 선원을 포함하거나 선원 없이 선체용선 (인도 자국민이 대여기간 동안 선박을 운영) 대여 및 차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